

의안 번호	367
----------	-----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67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 규정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출연금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4,632천원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
- 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지방세 세제개편 등의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1)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5년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4)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만분의 1.2와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을(1만분의 1.2 + 1만분의 0.5 = 1만분의 1.7)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연 규모

- 2025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21,929,395천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463만원임.

〈연도별 출연금 추이〉

(단위: 천원)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14,632	16,025	14,178	13,081	11,579

□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출연금으로 출연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